

# 미국 하와이대학 도서관 소장 准戶口 寫本을 통해 본 18세기 초 경상도 淸州牧 거주 淸州 河氏 일가의 가족 구성 및 소유 노비 양태\*

- 해외 소재 '동아시아한국학' 자료의 조사 및 분석(2) -

임학성\*\*

## 〈차 례〉

1. 머리말
2. 자료 소개 및 釐正
3. 戶首의 가계 및 가족 구성
4. 소유 노비의 양태
5.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미국 하와이대학교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戶籍簿寫』 자료에 수록된 “1702년 淸州 河道亨 准戶口 傳寫本”을 분석하여 자료의 서지학적 검토와 함께, 上典 일가의 가족 구성 및 소유 노비의 양태 등을 고구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된 내용 및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준호구 자료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의 舊제도 및 관습을 조사하기 위해 수집한 호적 자료의 傳寫本이었는데, 원본 자료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적잖은 오기가 있었음을 원본 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확인하여 교감하였다.

戶首 河道亨 일가는 진주 지역 내의 武班名族이었으며, 자료에 기재된 가족 구성은 호수 부부와 成婚 및 미혼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대가족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이들 일가에 남아있는 18세기 호적 자료들을 통해 진주 지역 내 몇 군데에 거처를 마련하여 이들 가족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2092184).

\*\*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

구성원이 수시로 거주지를 옮겨 다니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소유 노비는 총 153명으로 솔노비가 30.7%, 외거노비가 36.6%, 도망노비가 32.7%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였다. 성별로는 노가 41.2%, 비가 58.8%로 나타나 노에 비해 비가 약 20% 정도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거노비는 경상도 내의 6개 고을과 전라도 내의 4개 고을 등 총 10개 고을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경상도에 55.4%, 전라도에 44.6%의 거주 비율을 보였다. 외거노비가 가장 많이 거주한 곳은 전라도 順天(전체 외거노비의 21.4%)이었고 이밖에 경상도 淸州(19.6%), 전라도 康津(17.9%) 등에서도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외거노비의 거처가 주로 沿海 지역에 위치하였던 점과 상전이 거주하였던 淸州 고을 내에 거주한 노비가 많았던 점은 주목되었다. 이는 상전 일가의 거처가 진주 고을 내의 몇 군데에 존재하였다는 점과 관련성을 엿보게 해주었다.

전체 소유 노비의 평균 연령은 47.4세였으며, 성별로는 노가 44.7세, 비가 49.3세를 보여 노에 비해 비의 평균 연령이 4.6세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솔노비의 평균 연령은 30.9세(노 30.5세, 비 31.2세), 외거노비는 36.8세(노 32.9세, 비 39.6세)였던 반면 도망노비는 무려 74.8세(노 70.8세, 비 77.9세)나 되었다. 연령대별로는 ① 20대(25.5%), ② 40대(15.0%), ③ 30대(11.1%), ④ 10대·50대(각 10.5%), ⑥ 90대(7.2%), ⑦ 60대(6.5%), ⑧ 70대·80대·100세 이상(각 4.6%) 등의 순서를 보였다. 특히 90대 후반 이상 연령층의 노비가 적잖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대다수가 도망노비였고 이미 사망한 자들이었다고 본다. 이처럼 사망한 것이 분명한 도망노비의 연령을 추산하여 계속 기재한 까닭은 도망노비에게서 태어났을 소생에 대한 소유권을 증빙하려는 상전가의 의도·집착이었다고 본다.

끝으로, 전체 소유 노비 중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66.7%로 나타났다. 지역 형태별로는 솔노비가 68.1%, 외거노비가 78.6%, 그리고 도망노비가 52.0% 등으로 나타나 외거노비의 가족 연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국 17세기 말~18세기 초 진주에서 거주한 하도형 일가의 경우 소유 노비 인구의 증가 방식은 세습노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하와이대학, 准戶口, 淸州, 淸州 河氏, 가족 구성, 소유 노비

## 1. 머리말

이 연구는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동아시아한국학’<sup>1)</sup> 자료를 조사하여 소개 및 분석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시대의 사회경제 양

1) ‘동아시아한국학’은 한국학 연구에 뿌리 깊이 각인된 민족주의 이념과 서구중심적 방법론을 극복하고자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창안한 연구방법론이자 개념을 말한다. 그 연구방법의 하나로 해외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학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함으로써 해외 각 지역의 한국학과 소통하려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상을 실증하는 데 있어 최적의 자료 가운데 하나인 戶籍 관련 자료를 조사·소개하고, 그 자료가 연구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분석하려는 것이다.

필자가 이번에 조사·소개, 분석하려는 자료는 조선 후기에 작성된 호적 관련 古文書인 准戶口이다. 조선 왕조는 3년(干支가 子, 卯, 午, 酉로 끝나는 해)마다 각 고을별로 戶口調査를 하여 그 결과물로 戶籍大帳(일종의 ‘戶口簿’)을 작성하였는데, 戶首<sup>2)</sup>의 신청에 따라 관아에서 새로 작성된 호적대장에 등재된 해당 호의 기재 내용을 謄寫하여 발급한 것이 准호구이다.<sup>3)</sup>

따라서 准호구는 어느 한 家戶의 신분 증명 및 賦役 대상 판별은 물론 재산(准호구에 기재된 소유 노비)을 증빙하는 공증 문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에, 평민층 이하의 하층민보다는 주로 신분 및 소유 노비를 증빙하기 위해 양반신분층에서 발급받아 보관·세전하였다. 오늘날 전하고 있는 准호구의 대부분이 양반신분층의 것이라는 점은 바로 그런 연유에서이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准호구를 분석한 연구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는데,<sup>4)</sup> 이는 准호구가 조선시대에 살았던 어느 한 인물(양반신분층) 및 가문의 신분 판별과 그 변동, 通婚 및 가족 구성,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노비 양태 등을 실증적으로 考究하는데 최적의 자료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미국 하와이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시대~근대 호적 관련 자료를 조사·소개하고, 그 가운데 조선 후기 경상도 淸州 관아에서 어느 한 양반

2) 1896년 9월 1일 〈戶口調査規則〉의 반포로 ‘新式’ 호적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호구 신고 시 家戶를 대표하는 자를 ‘戶主’라고 공식적으로 칭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호적 관련 자료에서 그러한 자를 ‘戶首’로 칭하는 용례가 적잖이 확인된다. 이에 필자는 1896년 9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戶首’와 ‘戶主’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조선시대 准호구의 작성 과정 및 자료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성과를 참고할 수 있다. 崔承熙, 『戶口單子·准戶口에 대하여』, 『奎章閣』 7, 서울대 도서관, 1983; 문현주, 『조선후기 戶口單子和 准戶口の 작성과정 연구-慶州府의 호구단자와 准호구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38, 한국고문서학회, 2011.

4) 西川孝雄, 『17·8世紀安東·星州兩班『戶籍』の一檢討-率居及び外居奴婢の分析-』, 『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報告』 1, 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會, 1972. 한편 호구조사 시 戶首가 자기 가호 내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관아에 제출한 戶口單子를 분석한 연구는 李海濬, 『朝鮮後期 湖西地方 한 兩班家의 奴婢所有實態-公州中湖·慶州李家所傳 戶口單子分析-』, 『湖西史學』 8·9합, 호서사학회, 1980이 처음으로 확인된다.

가호에게 발급한 준호구 자료 1점을 분석하려 한다. 이 자료는 소유 노비에 대한 주목할 만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조선 후기 양반 가문의 재산 상태 및 사노비의 존재 양태를 이해하는 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자료는 朝鮮總督府에서 한국의 舊제도 및 관습을 조사(1906~1938년간 수행)할 목적으로 자료 원본을 傳寫한 것인데,<sup>5)</sup> 원본이 국내 연구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사본과 원본 자료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해외 소장 한국학 관련 자료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뿐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한국 관습법 조사 자료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연구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 2. 자료 소개 및 釐正

미국 하와이대학(University of Hawaii / Honolulu) 도서관에는 조선 후기~일제강점 초기에 작성된 다양한 戶籍 자료들을 편철한 『戶籍簿寫』(소장번호: East Asia DS 901.P5 V.317)가 소장되어 있다. 『戶籍簿寫』에 수록된 호적 자료들은 일제강점 초기에 작성된 民籍簿만 원본 자료이고 나머지 准戶口나 戶口單子是 조선 후기에 작성된 원본을 별도의 인쇄지에 필사하여 옮겨 적은 일종의 傳寫本이다.<sup>6)</sup>

『戶籍簿寫』에는 총 23질 88건의 호적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민적부 원본을 그대로 편철한 것이 5질 43건이고 나머지 18질 45건은 모두 전사한 것이다. 전사본 호적 자료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호구단자(호적초단 포함)가 14건, 준호구가 25건, 그리고 호적중초 내용을 발췌한 것이 6건 등이다(〈표 1〉 참조).

5) 조선시대 戶口 파악 舊制 및 관습 조사를 위한 고문서 수집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해서는 이승일, 『조선총독부의 ‘조선도서 및 고문서’의 수집·분류 활동』, 『기록학연구』 4, 한국기록학회, 2001; 이승일, 『일제의 관습조사사업과 식민지 ‘관습법’의 성격』, 『역사민속학』 17, 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등의 연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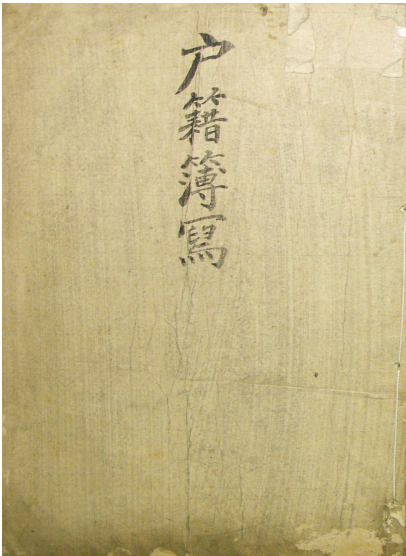
6) 『戶籍簿寫』에 수록된 호적 자료들에 대한 서지적 소개는 임학성, 『미국 Hawaii대학 소장 准戶口寫本을 통해 본 18세기 중엽 通津府 거주 昌寧 成氏 일가의 소유 노비 양태』, 『한국학연구』 6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3 참조.

〈표 1〉 하와이대학 소장 『戶籍簿寫』에 수록된 호적 자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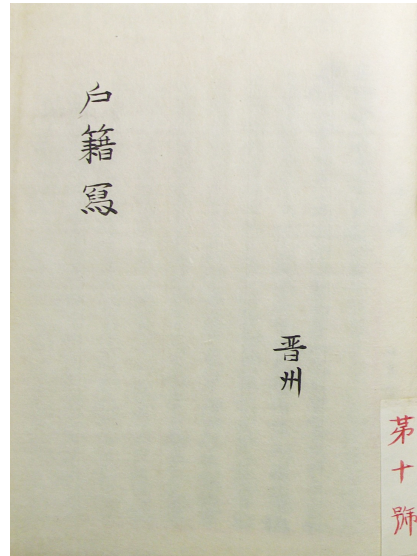
No	지역		자료 유형 / 형태	분량 (건)	비고
	道	郡縣			
1	경상남도	淸州牧	戶口單子 / 필사	7	淸州牧 거주 坡平 尹氏 일가의 1695~1777년 호적 자료 조선총독부용 폐지가 아니라 다른 용지에 전사한 것을 편철
			准戶口 / 필사	8	
2	漢城府		戶口單子 / 필사	1	漢城府 거주 全義 李氏 일가의 1681년 호구단자
3	漢城府		准戶口 / 필사	1	漢城府 거주 全義 李氏 일가의 1687년 준호구
4	전라북도	南原郡	民籍簿 / 원본	14	南原郡 長興面·萬德面 거주 주민(14개 戶)의 민적부
5	충청남도	扶餘郡	民籍簿 / 원본	9	扶餘郡 蒙道面 거주 주민(9개 戶)의 민적부
6	함경남도	咸興府	准戶口 / 필사	6	咸興府 거주 永川 李氏 일가의 1774~1834년 준호구
7	평안북도	龍川郡	戶籍草單 / 필사	3	龍川郡 거주 주민(14개 戶)의 1905년 호적조단 발췌
			戶籍中草 / 필사	1	龍川郡 거주 南陽 洪氏 일가의 '乙酉式年' 호적중초 발췌
8	평안북도	義州府	戶籍中草 / 필사	1	義州府 玉尙面 거주 주민(6개 戶)의 '庚子式年' 호적중초 발췌
				1	義州府 古寧朔面 거주 주민(10개 戶)의 '癸卯式年' 호적중초 발췌
				1	義州府 威化面 거주 주민(14개 戶)의 '辛卯式年' 호적중초 발췌
				1	義州府 古寧朔面 거주 주민(3개 戶)의 '己酉式年' 호적중초 발췌
1	義州府 古寧朔面 거주 주민(4개 戶)의 '癸卯式年' 호적중초 발췌				
9	경상북도	義城郡	准戶口 / 필사	1	義城郡 거주 永川 李氏 일가의 1666년 준호구
10	경상남도	淸州牧	准戶口 / 필사	1	淸州牧 거주 淸州 河氏 일가의 1702년 준호구 조선총독부용 폐지가 아니라 다른 용지에 전사한 것을 편철
11	평안남도	平壤府	民籍簿 / 원본	11	平壤府 隆興面·外川面 거주 주민(11개 戶)의 민적부
12	평안남도	鎭南浦	民籍簿 / 원본	5	鎭南浦府 元塘面 거주 주민(5개 戶)의 민적부 조선총독부용 폐지가 아니라 다른 용지에 전사한 것을 편철
13	평안북도	義州府	民籍簿 / 원본	4	義州府 光城面 거주 주민(4개 戶)의 민적부
14	경기도	通津府	准戶口 / 필사	1	通津府 거주 昌寧 成氏 일가의 1765년 준호구
15	평안남도	龍岡縣	准戶口 / 필사	1	龍岡縣 거주 濟州 高氏 일가의 1879년 준호구
16	평안남도	咸從府	准戶口 / 필사	2	咸從府 거주 三嘉 金氏 일가의 1870년과 1885년 준호구
17	평안남도	龍岡縣	准戶口 / 필사	1	龍岡縣 거주 淸州 金氏 일가의 1858년 준호구
18	(황해도)	(新溪郡)	戶口單子 / 필사	1	西里坊 內巨里(황해도 신계군 추정) 거주 沃川 全氏 일가의 '戊子式年' 호구단자
19	평안남도	三和府	准戶口 / 필사	1	三和府 거주 全州 趙氏 일가의 1810년 준호구

20	평안남도	三和府	准戶口 / 필사	1	三和府 거주 白川 趙氏 일가의 1846년 준호구
21	(황해도)	(新溪郡)	戶口單子 / 필사	1	元塘坊 楓井里(황해도 신계군 추정) 거주 延安 車氏 일가의 '戊子式年' 호구단자
22	평안남도	龍岡縣	准戶口 / 필사	1	龍岡縣 거주 蔚珍 林氏 일가의 1804년 준호구
23	?	?	戶口單子 / 필사	1	거주지 미상 楊州 金氏 일가의 '甲午式年' 호구단자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는 No10의 '康熙四十一年', 즉 1702년(肅宗 28·壬午)에 경상남도 淸州牧 관아에서 관내 東面 加佐村里 제 7통 제5호에 거주하는 戶首 幼學 河道亨(45세, 1658년·戊戌生)에게 발급한 准戶口 한 건이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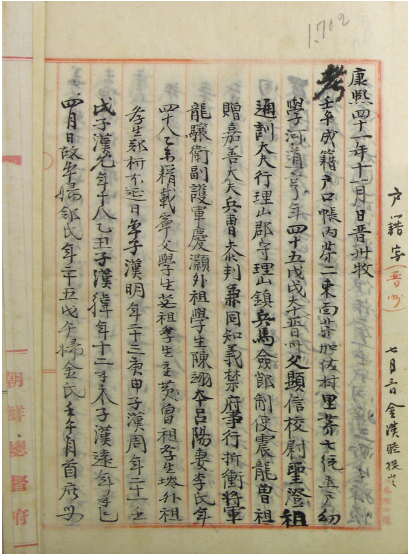


〈사진 1〉『戶籍簿寫』안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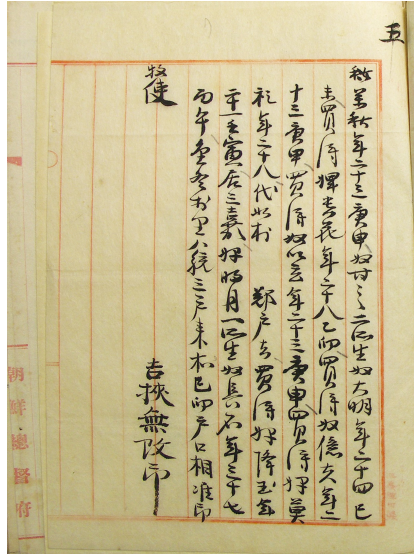


〈사진 2〉“淸州 戶籍 傳寫本”內題

7) 이하, 이 자료를 “1702년 淸州 河道亨 准戶口 傳寫本”이라 칭하기로 한다. 이 자료는 총 9면에 걸쳐 필사, 편철되어 있다.



〈사진 3〉 “1702년 淸州 河道亨 准戶口 傳寫本” 첫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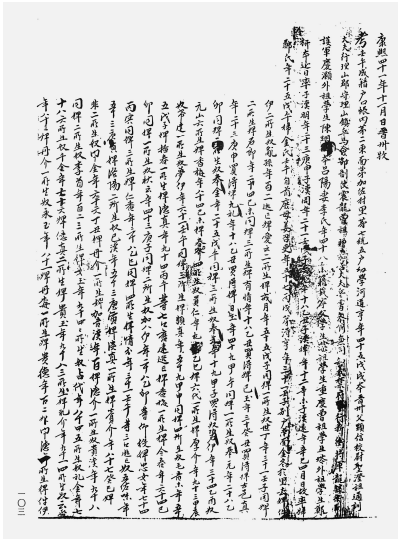


〈사진 4〉 “1702년 淸州 河道亨 准戶口 傳寫本” 끝 면

이 준호구 자료는 조선총독부에서 한국의 舊제도 및 관습을 조사하기 위해 수집한 것으로 자료의 본문 첫 면 우측에는 이 자료의 출처에 대한 정보를 “戶籍寫(淸州) 七月三日 金漢睦提出”이라고 기재하였다(〈사진 3〉 참조). 金漢睦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취조국 등에서 활동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되며,<sup>8)</sup> 『戶籍簿寫』에 수록된 또 다른 자료(〈표 1〉의 No9) 경상북도 義城郡 거주 永川 李氏의 1666년 준호구도 함께 제출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1702년 淸州 河道亨 准戶口 傳寫本”은 ‘三嘉朝田製’라고 인쇄된 껍지에 전사되었다. 따라서 이 자료는 김한목이 ‘三嘉朝田製’ 용지에 전사하여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戶籍簿寫』에 수록된 傳寫本 자료들이 모두 朝鮮總督府 전용 껍지에 직접 옮겨 적은 것과 대조된다. 호적 관련 자료들(전사본과 원본)을 모아 『戶籍簿寫』로 편철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료들 사이에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에서의 검색 결과 한말과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金漢睦이란 인물에 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5〉 “1702년 晉州 河道亨 准戶口 原本”  
첫 면

그런데 “1702년 晉州 河道亨 准戶口 傳寫本” 자료는 원본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사진 5〉 참조).<sup>9)</sup> 뿐만 아니라 준호구와 같은 시기에 작성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준호구 작성의 초본이랄 수 있는 戶口單子도 함께 소장되어 있어(〈사진 6〉 참조)<sup>10)</sup> “1702년 晉州 河道亨 准戶口 傳寫本” 자료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작성 과정에서의 오기 문제 등을 밝혀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sup>11)</sup>

그러면 전사된 자료를 정서해 보겠

는데, 편철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순서가 착종된 부분과 일부 오기가 발견된 부분은 각주로 교정하였다. 아울러 준호구 원본 자료와 대조하여 傳寫本에 기재가 누락된 부분은 [ ]로 표기하였다.

康熙四十一年十一月日晉州牧

考壬午成籍戶口帳內第二東面第加佐村里第七統五戶幼學河道亨年四十五戊戌本晉州父顯信校尉聖澄祖通訓大夫行理山郡守理山鎮兵馬僉節制使震龍曾祖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慶灑外祖學生陳翊[國]<sup>12)</sup>本呂陽妻李氏年四十八乙未籍載寧父學生苾祖學生重慶曾祖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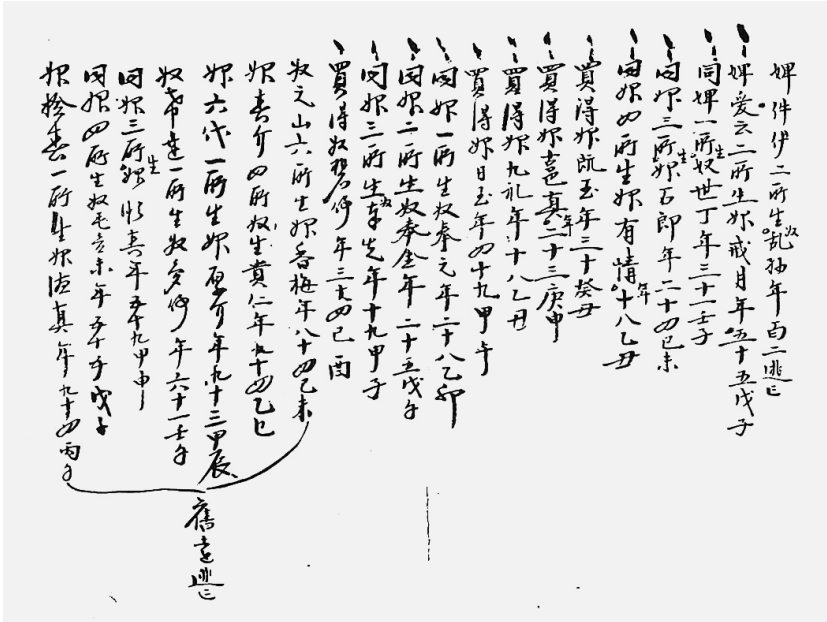
9) 1702년 河道亨 准戶口 원본의 사진은 『고문서집성 57-晉州 晉陽河氏 雲門派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103~105쪽에 수록.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이 자료를 소장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고문서집성 57』에 수록된 金鶴洙의 해제(『晉州 雲門 晉陽河氏家的 家系와 사회경제적 기반』) 3쪽 참조.

10) 1702년 河道亨 戶口單子 원본의 사진은 『고문서집성 57』, 95~102쪽에 수록.

11) 원본을 전사하면서 발생한 오기는 물론 전사한 용지를 편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순서의 착종도 확인하여 바로잡을 수 있었다.

12) 傳寫本에는 ‘國’자를 누락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사진 6〉 “1702년 淸州 河道亨 戶口單子 原本” 소유 노비 기재 부분의 한 면

生垵外祖學生鄭栢本延日率子漢明年二十三庚申子漢周年二十一壬戌子漢九年十八乙丑子漢緯年十二辛未子漢遠年辛巳四月日故率婦鄭氏年二十五戊午婦金氏壬午自首庶母 //<sup>13)</sup>姜召史年五十七丙戌弟得享年三十一壬子別戶南面金冬於里去婢件伊二所生奴亂孫年百二逃亡婢愛云二所生婢戒月年五十五戊子同婢一所生奴世丁年三十一壬子同婢二所生婢石<sup>14)</sup>郎年二十四己未同婢三所生婢有情年十八乙丑買得婢己玉年三十<sup>15)</sup>癸丑買得婢古邑眞年二十三庚申買得婢九禮年十八乙丑買得婢日<sup>16)</sup>玉年四十九甲午同婢一所生奴奉元年二十八乙卯同婢二所生奴奉金年二十五戊午同婢三所生奴奉先年十九甲子買得奴碧伊年三十四乙酉奴元山六所生婢香梅年八十四己未婢春介四所生奴貴仁年

13) 이상, 제1면 부분.

14) 傳寫本에는 ‘成’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15) 傳寫本에는 ‘三十一’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16) 傳寫本에는 ‘一’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九十四乙巳婢六代一所生婢厚介年九十三甲辰[婢]<sup>17)</sup>希達一所生奴夢伊年六十一壬午同婢三所生婢順 // <sup>18)</sup>眞年五十九甲申同婢四所生奴毛音未年五十五戊子婢檢春一所生婢德眞年九十四丙午等七口舊遠逃亡婢香梅一所生婢今春年六十四己卯<sup>19)</sup>同[婢]<sup>20)</sup>一所生奴秋云年四十三庚子同婢二所生奴加八伊年二十八乙卯<sup>21)</sup>等仰役婢忠女年七十四丙寅同婢三所生婢仁香年三十八乙巳同婢四所生婢情分年三十一壬午等三口逃亡奴五佐味年五十三庚寅婢洛陽二所生奴己漢年五十三庚寅[婢]<sup>22)</sup>淡眞一所生婢貴介年八十七癸巳婢[ ]非<sup>23)</sup>二所生奴內<sup>24)</sup>金年六十六丁丑婢丹介一所生婢訾漢年百婢德介一所生奴貴漢年九十八同婢二所生奴李首年百二三所生婢女玉年九十四四所生奴占代年八十四五所生奴禮金年七十八六所生奴千金年七十六婢億眞二所生婢貴玉年九十八三所生婢禮介年 // <sup>25)</sup><sup>26)</sup>九十一四所生奴云香年八十三婢丹介一所生奴永玉年八十一婢丹梅一所生婢貴德年百二婢內 德一所生婢件伊年九十二<sup>27)</sup>三所生奴毛上年七十九甲子奴夏同一所生婢成今年七十三癸酉婢辛玉一所生婢丹香年八十一壬戌奴男伊一所生婢日今年九十九甲寅婢玉春三所生婢萬玉年八十一壬戌婢以今二所生婢海子年五十三庚寅婢貴德一所生奴永立年七十八乙丑四所生奴毳石年四十八乙未婢以陽一所生婢貴德年四十一壬寅二所生奴宗渭年三十三庚戌等口<sup>28)</sup>久<sup>29)</sup>遠逃亡婢准化一所生奴先龍年五十八乙酉逃亡同婢二所生奴先立年五十五戊子同婢三所生婢先禮年五十二辛卯居鎮海同婢四所生奴先發年四十四己亥金冬於里八統三戶來婢取梅一所生奴永發年六十二辛巳婢

17) 傳寫本에는 ‘奴’/‘婢’ 표기를 누락하였고 원본에는 ‘奴’자로 기재하였으나, 뒤에 내용(‘同婢○所生’)을 참작하여 ‘婢’자로 釐正함.

18) 이상, 제2면 부분.

19) 傳寫本에는 ‘未’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20) 傳寫本에는 ‘同’자만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21) 傳寫本에는 ‘未’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22) 傳寫本에는 ‘奴’/‘婢’ 표기를 누락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23) 傳寫本에는 ‘非’자 한 개만 기재하였으나, 원본에는 ‘非’자 앞에 글자 한 개 정도 공백이 있음.

24) 傳寫本에는 ‘內’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25) 이상, 제7면으로 편철되었으나 제3면으로 釐正함.

26) 傳寫本에는 ‘年’자를 중복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27) 傳寫本에는 ‘九十三’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28) 傳寫本에는 ‘口’자를 누락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29) 傳寫本에는 ‘舊’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戒代三所生婢戒梅年七十癸酉婢彦介一所生婢//<sup>30)</sup>銀介年百十六婢眞良一所生婢秋介年百二十三所生婢己玉年百十五四所生婢於屯介年百一等六口久遠逃亡婢世代一所生婢淡春年九十九婢厚花二所生婢毛安年六十九甲戌三所生婢莫春年六十<sup>31)</sup>癸未四所生奴日文<sup>32)</sup>年四十六丁酉五所生奴得仁<sup>33)</sup>年二十七丙辰婢准德一所生婢己任<sup>34)</sup>年五十五戊子同婢二所生奴善夏伊年二十七丙辰三所生婢自業年二十一壬戌婢莫春二所生奴泉伊年三十四<sup>35)</sup>己酉婢己任一所生奴柳宗年二十九甲寅同婢二所生婢今德<sup>36)</sup>年十九甲子奴丁民[年]<sup>37)</sup>四十八乙未等口居順天<sup>38)</sup>婢愛眞二所生婢愛還年五十一壬辰同婢一所生婢玉環年三十一壬子三所生婢士花年二十四己未四所生奴己先年二十一壬戌五所生奴以先年十八乙丑婢件里三所生奴善金年四十二辛丑同婢四所生婢今玉年三十三庚戌居柵谷奴己男良妻一所生奴西云年四十二辛丑逃亡<sup>39)</sup>奴准//<sup>40)</sup>生良妻一所生奴淡沙里年三十五戊申二所生婢得禮年二十八乙卯三所生婢<sup>41)</sup>得陽年二十五戊午奴右立良妻一所生婢礼良年二十八乙卯二所生婢丑先年二十六丁巳奴先龍良[妻]<sup>42)</sup>一所生婢先月年三十三庚戌逃亡婢礼花一所生婢順礼年六十二<sup>43)</sup>辛巳二所生婢先月年四十七丙申三所生婢先花年四十四己亥等三口居熊川婢順礼一所生奴惡發年四十八乙未仰役二所生奴石連年二十八乙卯買得婢應玉年四十二辛丑金冬於里別戶去婢先月一所生奴萬日<sup>44)</sup>年二十二辛丑婢先花一所生奴日哲年二十二辛酉二所生婢日<sup>45)</sup>金年二十癸亥等三口居熊川婢礼

30) 이상, 제8면으로 편철되었으나 제4면으로 釐正함.

31) 傳寫本에는 ‘六’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32) 傳寫本에는 ‘又’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33) 傳寫本에는 ‘人’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34) 傳寫本에는 ‘壬’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35) 傳寫本에는 ‘二十四’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36) 傳寫本에는 ‘禮’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37) 傳寫本에는 ‘年’자를 누락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38) 傳寫本과 원본 모두 ‘順川’으로 기재하였으나, ‘順天’으로 釐正함.

39) 傳寫本에는 ‘去’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40) 이상, 제5면 부분.

41)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42) 傳寫本에는 ‘妻’자를 누락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43) 傳寫本에는 ‘六二’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44) 傳寫本에는 ‘一’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45) 傳寫本에는 ‘一’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今一所生[婢]46)岳德年四十六丁酉[同]47)婢一所生婢哲花年二十三48)庚申婢士目49)一所生婢今娘50)年二十一壬戌同婢二所生[婢]51)今女52)年十七丙寅加現婢丹玉一所生婢三鄉53)年五十二辛卯54)一所生婢守55)江年二十五戊午等二口逃56)亡奴厚仁年三十七丙午居//57)松谷婢林春一所生奴月生年三十八乙巳婢58)月先一所生婢59)信60)花年二十癸亥居永縣婢61)厚介年五十七丙戌同婢62)一所生婢63)古礼年三十四己酉婢64)六月年五十三庚寅同婢65)一所生婢66)業眞[年]67)四十二辛丑二所生婢68)己陽年二十七丙辰三所生婢69)己漢年二十二辛酉[等]70)五口居固城四所生奴石發年十九甲子加現奴今良妻一所生婢71)順玉年六十三庚辰二所生婢72)于音礼年二十八乙73)卯二口丙辰逃亡金冬於里別戶割去奴閑泉良妻一所生婢74)今香年五十九甲申居光陽婢75)順介二所生婢76)王之

46) 傳寫本에는 ‘奴’/‘婢’ 표기를 누락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47) 傳寫本에는 ‘同’자를 누락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48) 傳寫本에는 ‘三十二’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49) 傳寫本에는 ‘三玉’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50) 傳寫本에는 ‘痕’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51) 傳寫本에는 ‘奴’/‘婢’ 표기를 누락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52) 傳寫本에는 ‘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53) 傳寫本에는 ‘香’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54) 傳寫本에는 ‘丁卯’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55) 傳寫本에는 ‘受’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56) 傳寫本에는 ‘避’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57) 이상, 제6면 부분.

58)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59)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60) 傳寫本에는 ‘愼’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61)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62)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63)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64)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65)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66)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67) 傳寫本에는 ‘年’자를 누락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68)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69)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70) 傳寫本에는 ‘等’자를 누락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71)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72)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73) 傳寫本에는 ‘己’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74)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介年六十二辛巳四77)所生婢78)玉今年四十九甲午居海南79)奴千起良妻一所生  
奴丁守年四十三庚子二所生婢80)惡只年四十二癸卯三所生[奴]81)丁石年三十七  
丙午四所生奴丁必年三十四己酉奴丁守一所生奴貴天年十六丁卯二所生奴貴  
萬年十四己巳婢82)阿之一所生奴夢隱83)年十四己巳二//84)所生婢85)厚介年十  
二辛未三所生奴張卜86)年十一壬申四所生婢87)張88)今年十八乙丑等十口居康  
津89)買得婢90)玉郎年四十一壬寅居嶺海買得婢三月91)年四十七丙申同婢92)一  
所生婢93)先花年二十五戊午同婢94)二所生婢95)先陽年二十三庚申三所生婢96)  
善眞97)年二十癸亥四所生奴元靜年十八乙丑五所生婢98)件里99)年十六丁卯買  
得婢100)進陽年二十四己未居邑內婢101)九非一所生奴久發年四十一壬寅四所  
生婢102)元花103)年二十八乙卯婢104)壽介二所生婢105)孝心年二十三庚申三口

- 
- 75)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76)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77) 傳寫本에는 ‘三’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78)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79) 傳寫本에는 ‘南海’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80)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81) 傳寫本에는 ‘奴’/‘婢’ 표기를 누락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82)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83) 傳寫本에는 ‘彦’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84) 이상, 제3면으로 편철되었으나 제7면으로 釐正함.  
85)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86) 傳寫本에는 ‘長福’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87)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88) 傳寫本에는 ‘長’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89) 傳寫本에는 ‘江津’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90)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91) 傳寫本에는 ‘三月買得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92)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93)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94)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95)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96)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97) 傳寫本에는 ‘先進’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98)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99) 傳寫本에는 ‘伊’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100)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101)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102)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103) 傳寫本에는 ‘胡’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居南海婢<sup>106</sup>) 礼花年六十三<sup>107</sup>) 庚辰同婢<sup>108</sup>) 一所生奴戒民年三十九甲辰四所生婢<sup>109</sup>) 信花年十五戊午三口居鎮海婢<sup>110</sup>) 大春一所生奴毛日年五十四己丑二所生奴甲龍年四十七丁酉三所生奴甲尙年四十五戊戌三口居赤梁婢<sup>111</sup>) 時介一所生婢<sup>112</sup>) // <sup>113</sup>) 萬秋年二十三庚申奴甘之二所生奴大明年二十四己未買得婢貴花年二十八乙卯買得奴億夫年二十三庚申買得奴明玄年二十三庚申買得婢莫礼年二十八代如村鄭<sup>114</sup>) 戶去買得婢降玉年二十一壬戌<sup>115</sup>) 居三嘉婢明月一所生奴長石年三十七丙午金冬於里八統三戶來等己卯戶口相准印

牧使 // <sup>116</sup>)

### 3. 戶首의 가계 및 가족 구성

1702년 淸州 淸아로부터 발급받은 河道亭 淸호구에서 확인되는 하도형의 가계를 살펴보면 이 일가는 향촌사회의 武班 명족이었다.<sup>117)</sup> 이 일가는 조선 초기에 淸州 南面의 金冬於里 일대를 기반으로 하여 세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형 집안이 중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 때의 활약이었다. 河天瑞(하도형의 고조부)가 왜란 때 의병활동에 적극 가담

104)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105)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106)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107) 傳寫本에는 '六十六'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108)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109)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110)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111)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112) 傳寫本에는 '奴'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113) 이상, 제4면으로 편철되었으나 제8면으로 釐正함.

114) 傳寫本에는 '村'자와 '鄭'자 사이에 글자 두 개 정도 공백을 두었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115) 傳寫本에는 '寅'으로 기재하였으나, 원본대로 바로잡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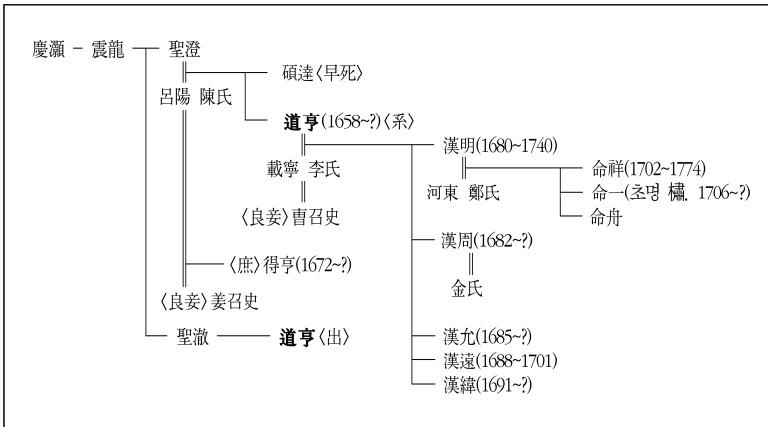
116) 이상, 제9면 부분.

117) 앞의 金鶴洙, 『淸州 雲門 淸陽河氏家の 家系와 社會경제적 基盤』, 3~8쪽 참조. 이하, 하도형 일가의 연혁은 이 글을 토대로 서술하였다.

하여 사후 勳功으로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河慶灑는 무과에 급제하여 宣傳官과 訓練院 副正 등의 무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을 뿐 아니라, 왜란 때 큰 전공을 세워 宣武原從功臣에 책훈되고 벼슬이 工曹 參判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하경호의 아들(하도형의 조부) 河震龍은 1633년(인조 11)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역임하였고, 효종 때 北伐이 추진되자 평안도 理山 군수로 부임하여 군사를 조련하고 군비를 강화하는 등 북벌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효종의 사망으로 북벌이 무산되자 진주로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이처럼 하천서·경호·진룡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친 忠義 활동으로 하도형 집안은 무반명족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였고, 通婚에 있어서도 진주 일대의 명문 가문과 인연을 맺으면서 가세를 유지하였다.



〈도 1〉 淸州 河道亨 일가의 가계

하진룡의 낙향 은거 이후 河聖澄·道亨·漢明 등으로 이어지는 후손들은 향리의 양반사족으로만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하한명의 아들인 河命祥이 1751년(영조 27)에 무과에 급제하여 五衛將과 경상도 機張 현감 등을 역임한 후, 1773년(영조 49)에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에까지 오르면서 재차 집안을 중흥시키게 되었다.118)

앞에서 소개한 『고문서집성 57 -晉州 晉陽河氏 雲門派篇-』(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에는 1699년(숙종 25)~1894년(고종 31)까지 하명상부터 그 후손들의 호구 관련 고문서(준호구와 호구단자) 107점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에서 확인되는 하도형 일가의 거주지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호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河道亨 및 그 후손의 거주지

시기	戶首(연령)	거주지	비고
1699년	河道亨(42)	晉州牧 東面 加佐村里	-
1702년	" (45)	"	-
1705년	河漢明(26)	"	河道亨의 長子
1708년	" (29)	"	호구단자
"	" (32)	晉州牧 南面 金冬於里	준호구
"	"	晉州牧 南面 松谷里	준호구
1711~1724년	" (32~45)	晉州牧 南面 金冬於里	-
1726년	" (47)	草溪郡 北面 初冊里 城山村	-
"	"	漢城府 南部 明哲坊 靑寧尉契	-
1726~1738년	" (47~59)	晉州牧 南面 金冬於里	-
1735년	河櫺(30)	전라도 光陽縣 浦面 磨助島	河漢明의 次子
1741~1774년	河命祥(40~73)	晉州牧 南面 金冬於里	河漢明의 長子
1777~1894년	-	"	河命祥의 직계 후손들

하도형은 생존 시까지 晉州牧 東面 加佐村里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705년 장남인 하한명이 부친이 사망하여 호수로 등장하면서 가좌촌리에서 거주하였으나, 1708년에는 가좌촌리와 진주목 南面에 속한 金冬於里와 松谷里 등에서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다가 1711년~1724년까지는 줄곧 金冬於里에서 거주하였고, 1726년에는 草溪郡 北面 初冊里 城山村과 漢城府 南部 明哲坊 靑寧尉契 등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1726

118) 이 집안에는 하명상이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에 오르면서 조부인 學生 河道亨을 通政大夫刑曹參議에 追贈하는 告身이 전하고 있기도 하다.



년~1738년까지는 다시 金冬於里에서 거주하였고 생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1741년 하한명의 장자 河命祥은 줄곧 金冬於里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1894년까지 그 직계 후손들 또한 金冬於里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다만, 1735년 자료에서 하한명의 차자 河櫛이 전라도 光陽縣 浦面에 속한 磨助島라는 섬에서 거주하였던 점은 특이한 점이라 하겠다.<sup>119)</sup>

이상, 살펴보았듯이 하도형 일가는 진주 지역 내 몇 군데의 거처가 있었고 이들 거처를 옮겨 다니며 생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하도형 사후 그 후손들의 주된 거처는 남면의 金冬於里였던 것 같다. 이렇듯 하도형 일가의 거처가 몇 군데에 마련되어 있었던 점은 하도형의 1702년 준호구에서 확인되는 소유 노비의 외거 양상을 이해하는데 주요 단서를 제공한다 하겠다.

한편, 1702년에 작성된 准戶口(傳寫本과 원본)와 戶口單子(원본)에서 확인되는 하도형과 처, 그리고 가족에 대한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戶首인 하도형(45세)의 四祖 직역과 이름은 顯信校尉 聖澄(父), 通訓大夫行理山郡守 理山鎭兵馬僉節制使 震龍(祖),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折衝將軍龍驤衛副護軍 慶灝(曾祖), 學生 陳翊國(本 呂陽. 外祖) 등이었다. 다음, 妻는 載寧 李氏(48세)였고 四祖는 學生 苾祖(父), 學生 重慶(祖), 學生 堉(曾祖), 學生 鄭枏(本 延日. 外祖)였다.

아들은 漢明(23세)과 漢周(21세), 漢允(18세), 漢緯(12세), 그리고 辛巳年(1701년) 4월에 사망한 漢遠 등이었다. 漢遠의 경우 漢緯 다음에 기재되었지만 그는 漢緯의 바로 위 형이었음이 확인된다.<sup>120)</sup> 1702년 준호구 작성 당시 사망한 상태였기에 3년 전(1699년) 호구조사 이후의 가족 변동 사항을 기재하여 보고하였던 것이며, 생존하고 있었던 동생 漢緯 다음에 그를 기재하였던 것 같다.

119) 1735년 준호구에서 河櫛이 거주하였다고 기록된 磨助島는 『輿地圖書』(18세기 중엽 편찬) 山川條에서 '馬槽島'('在縣東七十里')로 확인되며, 지도에서는 현의 동쪽에 위치한 月浦面 앞바다의 섬으로 그려져 있다. 한편 『戶口總數』(18세기 말엽 편찬)에서는 月浦面 소속의 '磨造島'로 표기되어 있다.

120) 앞의 『고문서집성 57』, 93~94쪽에 수록된 1699년 河道亭 준호구 자료에서는 漢遠이 12세의 나이로 생존해 있었고, 그 다음에 9세의 漢緯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들과 달리 딸에 대한 기재는 없었고 鄭氏(25세)와 金氏(연령 미기재)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다.<sup>121)</sup> 그런데 이 두 명의 며느리는 ‘壬午自首’, 즉 3년 전에 없던 가족이 이후 추가되었기에 “壬午年(1702년) 호구조사 때 스스로 신고한다”고 기재하였다.

이밖에 庶母인 姜召史(57세)와 庶弟인 得亨(31세)이 晉州 南面 金冬於里로 이거하여 별도의 家戶를 이루었다(‘別戶南面金冬於里去’)고 기재하였다. 3년 전에 작성된 1699년 河道亨의 准호구 자료에서는 서모와 서제가 동거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sup>122)</sup>

이상, 1702년 准호구 및 호구단자 자료를 통해 하도형 가족은 戶首 하도형 부부와 첫째 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그리고 미혼인 셋째와 다섯째 아들 등, 총 8명의 대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 중 부부 형태를 이룬 것은 세 쌍이었다. 3년 전에 동거하던 서모와 서제가 1702년 准호구 작성 직전에 金冬於里로 이거한 까닭은 첫째와 둘째 아들이 成婚하여 며느리 두 명이 가족 구성원에 새로 들어온 때문으로 보인다. 두 쌍이 신혼부부가 거처할 공간이 필요하였기에 그동안 자신들이 거주하던 공간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4. 소유 노비의 양태

### 1) 使役 형태

“1702년 晉州 河道亨 准戶口”에는 총 153명의 소유 노비가 기재되었는데 (<표 3> 참조), 使役 형태별로는 率奴婢가 47명(30.7%),<sup>123)</sup> 外居奴婢가 56

121) 1702년 准호구에서는 연령을 기재하지 않았던 며느리 金氏는 1702년 호구단자에서 또 다른 며느리 鄭氏와 동갑인 25세로 기재하였다(앞의 『고문서집성 57』, 95쪽). 그리고 하도형 사망 후 戶首가 된 河漢明이 발급받은 1705년 准호구를 통해 鄭氏가 하한명의 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앞의 『고문서집성 57』, 107쪽).

122) 앞의 『고문서집성 57』, 93쪽.

명(36.6%), 逃亡奴婢가 50명(32.7%) 등이다. 성별로는 각 형태별 모두 奴(40~42% 가량 구성)에 비해 婢(58~60% 가량 구성)의 비율이 20% 가까이 높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도 노가 약 40%, 비가 약 60%의 구성비를 보였다.

〈표 3〉 소유 노비의 형태별 분포

형태 \ 성별	奴	婢	계	비고
率奴婢	19명 [40.4]	28명 [59.6]	47명 (30.7)	仰役 4명(奴 3, 婢 1), 加現 2명(奴·婢 각 1), 移來 2명(모두 奴), 買得 9명(奴 3, 婢 6) 등 포함
外居奴婢	23명 [41.1]	33명 [58.9]	56명 (36.6)	淸州 거주 11명(奴 6, 婢 5 *買得 婢 3명 포함), 他邑 거주 45명(奴 17, 婢 28 *買得 婢 2명 포함)
逃亡奴婢	21명 [42.0]	29명 [58.0]	50명 (32.7)	도망노비 중 거처(淸州) 확인 2명(母·女)
전체	63명 [41.2]	90명 [58.8]	153명 (100)	-

비고) ① ( ) 안의 수치는 전체 奴婢 수(153명)에 대한 백분율임.

② [ ] 안의 수치는 각 형태별 奴·婢 합계에 대한 백분율임.

솔노비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仰役이 4명(노 3명, 비 1명), 加現이 2명(노비 각 1명), 移來가 2명(모두 노), 買得이 9명(노 3명, 비 6명) 등이다. 이들 양역·가현·이래·매득 등의 노비는 3년 전에 작성된 호적 이후 새로 솔노비로 추가된 상황을 말해 준다. 나머지 30명(노 10명, 비 20명)은 3년 전과 솔거 상황에 변동이 없는 노비들이라 하겠다.

그런데 솔노비 47명은 모두 상전과 한울다리 내에서 함께 동거하기에는 규모가 크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상전 河道亨 가족은 戶首 부부와 장남과 차남 부부, 그리고 미혼의 두 아들이 동거하고 있었다. 최소한 상전 가족이 거처할 방이 4개는 필요하였다. 본 준호구 자료에서는 노비들의 부부 관계를 알려주는 기록이 없어 판단할 정보가 부족하기는 하나 적어도 솔노비가 거처

123) “1702년 淸州 河道亨 准戶口 傳寫本”에는 ‘率’ 노비에 대한 표기가 없다. 물론 이는 원본 자료에 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외거하는 지역을 표기한 노비(이들을 ‘외거노비’로 분류)와 도망하였음을 표기한 노비(이들을 ‘도망노비’로 분류)를 제외한 나머지 노비들을 ‘솔노비’로 분류하였다.

할 방이 20개 이상은 필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르긴 해도 1702년에 하도형이 거주했던 가옥은 가족이 거처할 4개의 방 외에 솔노비가 거처할 행랑채가 20개 정도나 되는 대저택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솔노비들의 대부분은 상전의 가옥 주변에 위치한 이른바 ‘호저(戶低)집’에서 거주하였을 것이다.<sup>124)</sup> 이들은 필요시 상전이 수시로 불러 일을 시키는 존재였으며, 반면 상전의 가옥 내에서 거주하며 밤낮으로 집안일을 돌보는 솔노비를 이 준호구 자료에서는 특별히 ‘仰役’ 노비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 자료에 기재된 양역 노비 4명 중 비(64세)와 노 2명(43세, 28세)은 모자 관계였으며, 나머지 양역 노(48세) 1명은 경상도 熊川에 외거하는 비(62세)의 아들로 확인된다. 이는 바로 양역노비의 성격이 외거하던 노비를 상전가로 불러들여 立役시키는 노비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25)</sup>

한편, 移來 노 2명(44세, 37세)은 모두 晉州 南面 金冬於里 8통 3호에서 왔다고 기재하였다. 金冬於里에는 상전 河道亨 일가 소유의 또 다른 가옥이 있었는데,<sup>126)</sup> 바로 그 가옥이 8통 3호였지 않나 생각된다. 아울러 1702년 직전에 金冬於里로 이거하였던 서모와 서제가 별도로 마련한 가호 또한 이 8통 3호였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124) 호저집 성격의 家座 양태 및 그 원인에 대하여서는 韓榮國, 『朝鮮王朝 戶籍의 基礎의 研究』, 『韓國史學』 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林學成, 『朝鮮後期 戶籍臺帳에 보이는 私奴婢의 二重登載 相에 대하여』, 『古文書研究』 3, 한국고문서학회, 1992 등 참조.

125) 조선시대 사노비의 한 형태인 仰役노비에 대해 이영훈은 단순히 거주형태에 따라 구분하였던 종래의 솔거노비 대신 身役 부당형태에 따라 立役노비로 구분해야 하며, 양역노비가 바로 입역노비를 부르는 명칭이었다고 하였다(李榮薰, 『朝鮮社會 率居·外居奴婢區分再考』, 『韓國近代經濟史 研究의 成果: 秋堰 權丙卓 博士 華甲紀念論叢 II』, 형설출판사, 1989), 이에 반해 전형택은 상전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거하던 노비를 일시적으로 불러들여 사역시키는 노비가 양역노비였으며, 이들은 상전가에서 기식하거나 또는 자기 집에서 기거하면서 양역하기도 하였다고 하였다(『조선 후기 고문서에 나타난 仰役奴婢의 성격』, 『全南史學』 17, 전남사학회, 2001). 한편, 정진영은 양역노비를 상전가의 행랑채에서 기거하면서 취사를 함께 하는 ‘在家仰役’과 자신의 집에서 상전가를 왕래하는 ‘自家仰役’으로 구분하였다(『18세기 일기자료를 통해본 사노비의 존재형태』, 『古文書研究』 53, 한국고문서학회, 2018).

126) 河漢明이 호수를 승계한 1705년 이후에 작성된 준호구·호구단자 자료들을 보면 진주의 東面 加佐村里와 南面 金冬於里를 왕래하며 거주하다가 1711년 이후로는 줄곧 金冬於里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2) 外居奴婢의 거주지

외거노비 56명(노 23명, 비 33명)의 거주지를 살펴보면(〈표 4〉 참조),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에서만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을별로는 상전 하도형이 거주하고 있는 淸州를 비롯하여 熊川·鎭海·固城·南海·三嘉(이상, 경상도 6개 고을), 順天·康津·海南·光陽(이상, 전라도 4개 고을) 등 10개 지역이었다.<sup>127)</sup>

이들 10개 고을 중 외거노비가 가장 많이 거주한 지역은 전라도 순천으로 전체 외거노비의 21.4%(12명)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도 진주가 19.6%(11명), 전라도 강진이 17.9%(10명), 경상도 웅천이 10.7%(6명), 경상도 진해와 고성이가 각 8.9%(5명), 이밖에 나머지 경상도 남해와 삼가, 전라도 해남과 광양 등은 5%(3명) 이하의 점유율을 보였다.

〈표 4〉 외거노비의 거주 분포

지역		성별		계	비고
		奴	婢		
경상도	淸州	6명 (26.1)	5명 (15.2)	11명 (19.6)	南面: 柵谷里 2명(奴·婢 각 1), 金冬於里 2명(奴 1, 買得 婢 1), 松谷里 1명(奴), 永縣里 1명(婢), 赤梁里 3명(奴) 東面: 代如村里 1명(買得 婢) 北面: 邑內里 1명(買得 婢)
	熊川	2명	4명	6명	-
	鎭海	1명	4명	5명	買得 婢 1명
	固城	-	5명 (15.2)	5명	-
	南海	1명	2명	3명	-
	三嘉	-	1명	1명	買得 婢
	소계	10명 (43.5)	21명 (63.6)	31명 (55.4)	-
전라도	順天	6명 (26.1)	6명 (18.2)	12명 (21.4)	-
	康津	7명	3명	10명	-

127) 외거노비의 거처가 주로 沿海 지역에 위치하였던 점은 주목된다. 상전 가의 해산물 확보 및 해상 활동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30.4)		(17.9)	
	海南	-	2명	2명	-
	光陽	-	1명	1명	-
	소계	13명 (56.5)	12명 (36.4)	25명 (44.6)	-
전체		23명 (100)	33명 (100)	56명 (100)	-

비고)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媼는 상대적으로 전라도 지역에서 다수가(전체 외거 노의 56.5%) 거주하였던 반면 婢는 경상도 지역에서 다수가(전체 외거 비의 63.6%)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거노비 가운데 南面의 金冬於里로 간 노(28세)·비(42세, 買得)도 각 1명씩이 확인된다.<sup>128)</sup> 이들 역시 金冬於里에 있는 상전의 또 다른 가옥(또는 주변)에서 거주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밖에 소유 노비들이 외거하고 있었던 진주 남면의 松谷里와 경상도 固城, 전라도 順天 등에는 河道亭 일가 소유의 노비와 田畝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1638년에 작성된 分財記에 河震龍(하도형의 조부)의 처 泰安 朴氏가 親母로부터 順天에 거주하는 노비와 松谷里에 소재한 畝를 상속받은 내용,<sup>129)</sup> 그리고 1689년에 작성된 분재기에 河道亭이 자녀들에게 松谷里에 소재한 田畝와 固城에 소재한 畝를 상속하는 내용<sup>130)</sup> 등을 미루어볼 때 그러하다. 즉 하도형이 소유한 외거노비의 상당수는 先代로부터 상속받은 여러 지역의 재산(전답 및 가옥)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31)</sup>

128) 熊川 외거 비의 이들은 양역 노(48세) 외에 또 한 명(28세)이 더 있었는데, 이전 호적 작성 이후 晉州 南面 金冬於里에 있는 상전의 別戶로 간 것으로 기재되었다. 형과 함께 양역을 하다가 金冬於里에 있는 상전의 또 다른 가옥으로 양역하러 간 것으로 추정된다.

129) 앞의 『古文書集成』 57, 354~355쪽.

130) 앞의 『古文書集成』 57, 357~360쪽.

131) 이밖에 전라도 光陽縣에 비 1명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1735년에 하도형의 손자 河漣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도 보여진다.

### 3) 소유 노비의 연령

전체 노비 153명(노 63명, 비 90명)의 평균 연령은 47.4세였으며 성별로는 노가 44.7세, 비가 49.3세를 보여 노에 비해 비의 평균 연령이 4.6세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소유 노비의 평균 연령

형태	구분	성별 인원수		연령 총합	평균 연령
		노	비		
술노비	노	19명		580세	30.5세
	비		28명	873세	31.2세
	계	47명		1,453세	30.9세
외거노비	노	23명		757세	32.9세
	비		33명	1,306세	39.6세
	계	56명		2,063세	36.8세
도망노비	노	21명		1,480세	70.8세
	비		29명	2,258세	77.9세
	계	50명		3,738세	74.8세
전체	노	63명		2,817세	44.7세
	비		90명	4,437세	49.3세
	계	153명		7,254세	47.4세

사역 형태별 평균 연령을 보면, 먼저 술노비는 30.9세(노 30.5세, 비 31.2세), 외거노비는 36.8세(노 32.9세, 비 39.6세), 그리고 도망노비는 74.8세(노 70.8세, 비 77.9세)였다. 따라서 술노비와 외거노비는 전체 평균연령(47.4세)보다 16세~10세 정도 낮았지만, 도망노비는 전체 평균연령보다 무려 27세 정도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소유 노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표 6> 참조), 전체로는 ① 20대(25.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② 40대(15.0%), ③ 30대(11.1%), ④

10대·50대(각 10.5%), ⑥ 90대(7.2%), ⑦ 60대(6.5%), ⑧ 70대·80대·100세 이상(각 4.6%) 등의 순서를 보였다.<sup>132)</sup> 따라서 노동력이 건설한 20대~40대의 연령층 노비가 전체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6〉 소유 노비의 연령 분포

형태·성별		연령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이상		
率奴婢	奴	4	7	4	3	1	-	-	-	-	-	19명	
	婢	4	14	3	3	3	1	-	-	-	-	28명	
	소계	8 (17.0)	21 (44.7)	7 (14.9)	6 (12.8)	4 (8.5)	1 (2.1)	-	-	-	-	-	47명 (100)
外居奴婢	奴	4	6	5	7	1	-	-	-	-	-	23명	
	婢	4	10	2	7	4	5	-	-	1	-	33명	
	소계	8 (14.3)	16 (28.6)	7 (12.5)	14 (25.0)	5 (8.9)	5 (8.9)	-	-	1 (1.8)	-	56명 (100)	
逃亡奴婢	奴	-	-	1	2	4	3	4	3	3	1	21명	
	婢	-	2	2	1	3	1	3	4	7	6	29명	
	소계	-	2 (4.0)	3 (6.0)	3 (6.0)	7 (14.0)	4 (8.0)	7 (14.0)	7 (14.0)	10 (20.0)	7 (14.0)	50명 (100)	
전체	奴	8 (12.7)	13 (20.6)	10 (15.9)	12 (19.0)	6 (9.5)	3 (4.8)	4 (6.3)	3 (4.8)	3 (4.8)	1 (1.6)	63명 (100)	
	婢	8 (8.9)	26 (28.9)	7 (7.8)	11 (12.2)	10 (11.1)	7 (7.8)	3 (3.3)	4 (4.4)	8 (8.9)	6 (6.7)	90명 (100)	
	소계	16 (10.5)	39 (25.5)	17 (11.1)	23 (15.0)	16 (10.5)	10 (6.5)	7 (4.6)	7 (4.6)	11 (7.2)	7 (4.6)	153명 (100)	

비고) ( ) 안의 수치는 백분율임.

132) 최연소자는 11세로 전라도 康津에 거주한 외거 노였으며(〈부표〉의 No127), 최고령자는 123세의 비로 오래 전에 도망했다고 하였다(〈부표〉의 No060). 이는 도망한 노비 당사자는 물론 도망 이후 태어났을 소유 비의 소생들에 대한 소유권 증빙을 위한 방식이었지 실제 생존자는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한편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노는 ① 20대(20.6%), ② 40대(19.0%), ③ 30대(15.9%), ④ 10대(12.7%), ⑤ 50대(9.5%), ⑥ 70대(6.3%), ⑦ 60대 · 80대 · 90대(각 4.8%), ⑩ 100세 이상(1.6%) 등의 순서를 보였다. 그리고 비는 ① 20대(28.9%), ② 40대(12.2%), ③ 50대(11.1%), ④ 10대 · 90대(각 8.9%), ⑥ 30대 · 60대(각 7.8%), ⑧ 100세 이상(6.7%), ⑨ 80대(4.4%), ⑩ 70대(3.3%) 등의 순서를 보였다. 따라서 노와 비의 연령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다만 9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노에 비해 비의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형태별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먼저 솔노비의 경우 ① 20대(44.7%)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② 10대(17.0%), ③ 30대(14.9%), ④ 40대(12.8%), ⑤ 50대(8.5%), ⑥ 60대(2.1%) 등의 순서를 보였다.<sup>133)</sup> 솔노비에서는 70대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는 20대에서 노와 비 모두 가장 많았는데, 노(전체 솔노의 36.8%)에 비해 비(전체 솔비의 50.0%)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다음 외거노비의 경우 ① 20대(28.6%), ② 40대(25.0%), ③ 10대(14.3%), ④ 30대(12.5%), ⑤ 50대와 60대(각 8.9%), ⑦ 90대(1.8%) 등의 순서를 보였다.<sup>134)</sup> 외거노비에서는 70대와 80대, 그리고 100세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는 노는 40대(30.4%)가 가장 많았으며, 비는 20대(30.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도망노비의 경우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가 확인되었는데, ① 90대(20.0%), ② 50대 · 70대 · 80대 · 100세 이상(각 14.0%), ⑥ 60대(8.0%), ⑦ 30대와 40대(각 6.0%), ⑨ 20대(4.0%) 등의 순서를 보였다.<sup>135)</sup> 따라서 솔노비와 외거노비의 경우 20대 연령층이 가장 많았던 반면 도망노

133) 솔노비 가운데 최연소자는 16세의 비(〈부표〉의 Na135), 최고령자는 64세의 비(〈부표〉의 Na020)로 확인된다.

134) 외거노비 가운데 최연소자는 11세의 노(〈부표〉의 Na127), 최고령자는 99세의 비(〈부표〉의 Na063)로 확인된다.

135) 도망노비 가운데 최연소자는 25세의 비(〈부표〉의 Na103), 최고령자는 123세의 비(〈부표〉의 Na060)로 확인된다.

비는 20대 연령층이 가장 적고 90대를 비롯한 고령층이 가장 많은 반대의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성별로는 노예 비해 비가 90대 이상의 최고령층이 다수(44.8%)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상, 소유 노비의 연령 분포를 종합해 보면, 노예 비해 상대적으로 비의 고령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도망노비에서 90대 이상, 특히 100세 이상의 비가 많이 기재되어 있었던 때문이었다. 그런데 도망노비 가운데 90대 후반 이상의 고령층은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처럼 사망하였을 것이 분명한 도망노비의 연령을 추산하여 호적 자료에 계속 기재하였던 까닭은 도망노비에게서 태어났을 소생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상전가의 의지 때문이었다. 따라서 90대 후반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도망노비들을 제외한다면 실제 생존 노비들만의 평균 연령은 적잖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겠다.

#### 4) 소유 노비의 가족 구성

전체 153명의 소유 노비 중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총 102명으로 나타나 약 67% 정도의 노비가 가족으로 연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7> 참조). 형태별로는 솔노비에서는 약 68%(전체 솔노비 대비), 외거노비에서는 약 79%(전체 외거노비 대비), 그리고 도망노비에서는 약 52%(전체 도망노비 대비) 등이 가족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족 관계 확인 노비의 비율

형태 \ 구분	전체 노비수	가족관계 연계 노비수	연계 비율
率奴婢	47명	32명	68.1%
外居奴婢	56명	44명	78.6%
逃亡奴婢	50명	26명	52.0%
전체	153명	102명	66.7%

이처럼 절반이 훨씬 넘는 67%의 소유 노비가 가족 관계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 볼 때, 17세기 말~18세기 초 진주에서 거주한 하도형 일가의 경우 소유 노비 인구의 증가 원인은 세습노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석된다.

## 5. 맺음말

이상, 미국 하와이대학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戶籍簿寫』 자료에 수록된 88건의 호적 자료 중 “1702년 淸州 河道亭 准戶口 傳寫本”을 택하여 자료에 대한 서지학적 검토, 그리고 18세기 초 慶尙道 淸州에서 거주하였던 武班名族 가문이 소유한 153명의 노비 양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확인된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이 준호구 자료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의 舊제도 및 관습을 조사하기 위해 수집한 호적 자료의 傳寫本이었다. 그런데 원본 자료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적잖은 오기가 있었음을 원본 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이를 교감하였다.

둘째, 戶首 河道亭 일가는 진주 지역 내의 武班名族이었으며, 자료에 기재된 가족 구성은 호수 부부와 成婚 및 미혼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대가족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이들 일가에 남아있는 18세기 호적 자료들을 통해 진주 지역 내 몇 군데에 거처를 마련하여 이들 가족 구성원이 수시로 거주지를 옮겨 다니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자료에서 확인되는 소유 노비 153명의 사역 형태는 ‘率奴婢’·‘外居奴婢’·‘逃亡奴婢’ 등으로 구별할 수 있었는데, 전체 노비 가운데 솔노비가 30.7%, 외거노비가 36.6%, 도망노비가 32.7%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였다. 성별로는 노가 41.2%, 비가 58.8%로 나타나 노에 비해 비가 약 20% 정도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거노비는 경상도 내의 6개 고을과 전라도 내의 4개 고을 등 총 10개 고을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경상도에 55.4%, 전라도에 44.6%의 거주 비율을 보였다. 외거노비가 가장 많이 거주한 곳은 전라도 順天(전체 외거노비의 21.4%)이었고 이밖에 경상도 淸州(19.6%), 전라도 康津(17.9%) 등에서도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외거노비의 거처가 주로 沿海 지역에 위치하였던 점과 상전이 거주하였던 淸州 고을 내에 거주한 노비가 많았던 점은 주목되었다. 이는 상전 일가의 거처가 진주 고을 내의 몇 군데에 존재하였다는 점과 관련성을 엿보게 해주었다.

다섯째, 전체 소유 노비의 평균 연령은 47.4세였으며, 성별로는 노가 44.7세, 비가 49.3세를 보여 노에 비해 비의 평균 연령이 4.6세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솔노비의 평균 연령은 30.9세(노 30.5세, 비 31.2세), 외거노비는 36.8세(노 32.9세, 비 39.6세)였던 반면 도망노비는 무려 74.8세(노 70.8세, 비 77.9세)나 되었다. 한편 전체 소유 노비 중 최연소자는 11세(외거 노), 최고령자는 123세(도망 비)였으며, 연령대별로는 ① 20대(25.5%), ② 40대(15.0%), ③ 30대(11.1%), ④ 10대·50대(각 10.5%), ⑥ 90대(7.2%), ⑦ 60대(6.5%), ⑧ 70대·80대·100세 이상(각 4.6%) 등의 순서를 보였다. 특히 90대 후반 이상 연령층의 노비가 적잖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대다수가 도망노비였고 이미 사망한 자들이었다고 본다. 이처럼 사망한 것이 분명한 도망노비의 연령을 추산하여 계속 기재된 까닭은 도망노비에게서 태어났을 소생에 대한 소유권을 증빙하려는 상전가의 강한 의도 및 집착 때문이었다.

끝으로, 전체 소유 노비 중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는 66.7%로 나타났다. 사역 형태별로는 솔노비가 68.1%, 외거노비가 78.6%, 도망노비가 52.0% 등을 보여 외거노비의 가족 연계성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17세기 말~18세기 초 진주에서 거주한 하도형 일가의 경우 소유 노비 인구의 증가 원인은 세습노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해외 소재 한국학 자료에 대한 관심과 연구 활용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연구 결과가 비록 사례 연구에 국한되지만, 일단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조사하여 傳寫한 자료에 대한 정치한 고증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아울러 조선 후기 경상도 지역에 거주한 어느 한 武班名族 일가의 가족 구성과 소유 노비의 양태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 참고문헌

### 1. 자료

‘1702년 晉州 河道亨 准戶口’, 『戶籍簿寫』(미국 하와이대학 도서관 소장. 소장 번호: East Asia DS 901.P5 V.317)에 所收.

『古文書集成 57-晉州 雲門 晉陽河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輿地圖書 下』 전라도 光陽縣;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3.

『戶口總數』 제6책 전라도 光陽; 서울대학교규장각 영인본, 1996.

### 2. 단행본

平木 實, 『朝鮮後期 奴婢制 研究』, 지식산업사, 1982.

全炯澤, 『朝鮮後期奴婢身分研究』, 일조각, 1989.

### 3. 논문

김익환, 『17~19 진천 평산 신씨의 노비 소유와 노비의 존재양상』, 『韓國學論叢』 4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5.

金鶴洙, 『晉州 雲門 晉陽河氏家の 家系와 사회경제적 기반』, 앞의 『古文書集成』 57(2001)에 수록.

李榮薰, 『朝鮮社會 率居·外居奴婢區分再考』, 『韓國近代經濟史研究의 成果: 秋堰 權丙卓 博士 華甲紀念論叢 II』, 형설출판사, 1989.

李海濬, 『朝鮮後期 湖西地方 한 兩班家の 奴婢所有實態-公州中湖·慶州李家所傳 戶口單子分析-』, 『湖西史學』 8·9합, 호서사학회, 1980.

문숙자, 『16-17세기 兩班家 노비 가족의 존재 형태-固城李氏 臨淸閣 分財記 분석을 통하여-』, 『古文書研究』 32, 한국고문서학회, 2008.

문현주, 『조선 후기 戶口單子와 準戶口의 작성과정 연구-慶州府의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38, 한국고문서학회, 2011.

박경하·황기준, 『조선 후기 忠淸 懷德縣 宋村理 지역의 私奴婢 존재 양상-恩津宋氏 同春堂 後孫家 호적자료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53,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西川孝雄, 『17·8世紀安東·星州兩班『戶籍』の一檢討-率居及外居奴婢の分析-』, 『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報告』 1, 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會, 1972.

이승일, 『조선총독부의 ‘조선도서 및 고문서’의 수집·분류 활동』, 『기록학연구』 4, 한국기록학회, 2001.

\_\_\_\_\_, 『일제의 관습조사사업과 식민지 ‘관습법’의 성격』, 『역사민속학』 17, 한국역사민속학회, 2003.

임학성, 『朝鮮後期 戶籍臺帳에 보이는 私奴婢의 二重登載相에 대하여』, 『古文書研究』 3, 한국고문서학회, 1992.

\_\_\_\_\_, 『조선시대 奴婢制의 推移와 노비의 존재 양태』, 『역사민속학』 41, 한국역사민속학회, 2013.

\_\_\_\_\_, 『미국 Hawaii대학 소장 准戶口 寫本을 통해 본 18세기 중엽 通津府 거주 昌寧 成氏 일가의 소유 노비 양태』, 『한국학연구』 68,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3.

전형택, 『조선 후기 한 양반가의 호적자료를 통해 본 사노비의 존재양태-광주 전의이씨 문의공파 중가 소장 고문서의 사례 분석-』, 『朝鮮時代史學報』 15, 조선시대사학회, 2000.

- 전형택, 「조선후기 고문서에 나타난 仰役奴婢의 성격」, 『全南史學』 17, 전남사학회, 2001.
-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자료를 통해 본 사노비의 존재양태-대구 경주최씨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1-1, 역사문화학회, 2008.
- 정진영, 「18세기 일기자료를 통해본 사노비의 존재형태-百弗庵 崔興遠의 <曆中日記>(1735-1786)를 중심으로-」, 『古文書研究』 53, 한국고문서학회, 2018.
- 崔承熙, 「戶口單子 · 准戶口에 대하여」, 『奎章閣』 7, 서울대 도서관, 1983.
- 韓榮國, 「朝鮮王朝 戶籍의 基礎的 研究」, 『韓國史學』 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5.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종합정보서비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사이트맵(<https://www.koreanhistory.or.kr>).

## 〈부표〉 1702년 靑州 거주 河道亨 소유의 노비 현황

No	성별	이름(나이)	부모 및 출생 정보	비고
001	노	亂孫(102)	비 件伊의 2소생	逃亡
002	비	戒月(55)	비 愛云의 2소생	
003	비	石郎(24)	비 戒月の 2소생	*모 戒月 ⇨ Na002
004	비	有情(18)	비 戒月の 3소생	*모 戒月 ⇨ Na002
005	비	己玉(30)	미기재	買得
006	비	古邑眞(23)	미기재	買得
007	비	九禮(18)	미기재	買得
008	비	日玉(49)	미기재	買得
009	노	奉元(28)	비 日玉의 1소생	*모 日玉 ⇨ Na008
010	노	奉金(25)	비 日玉의 2소생	*모 日玉 ⇨ Na008
011	노	奉先(19)	비 日玉의 3소생	*모 日玉 ⇨ Na008
012	노	碧伊(34)	미기재	買得
013	비	香梅(84)	노 元山の 6소생	舊遠逃亡
014	노	貴仁(94)	비 春介의 4소생	舊遠逃亡
015	비	厚介(93)	비 六代의 1소생	舊遠逃亡
016	노	夢伊(61)	비 希達의 1소생	舊遠逃亡
017	비	順眞(59)	비 希達의 3소생	舊遠逃亡
018	노	毛音末(55)	비 希達의 4소생	舊遠逃亡
019	비	德眞(94)	비 檢春의 1소생	舊遠逃亡
020	비	今春(64)	비 香梅의 1소생	仰役 *모 香梅 ⇨ Na013
021	노	秋云(43)	비 今春의 1소생	仰役 *모 今春 ⇨ Na020
022	노	加八伊(28)	비 今春의 2소생	仰役 *모 今春 ⇨ Na020
023	비	忠女(74)	미기재	逃亡
024	비	仁香(38)	비 忠女の 3소생	逃亡 *모 忠女 ⇨ Na023
025	비	情分(31)	비 忠女の 4소생	逃亡 *모 忠女 ⇨ Na023
026	노	五佐味(53)	미기재	久遠逃亡
027	노	己漢(53)	비 洛陽의 2소생	久遠逃亡
028	비	貴介(87)	비 淡眞의 1소생	久遠逃亡



No	성별	이름(나이)	부모 및 출생 정보	비고
029	노	內 金(66)	비 [ ]非의 2소생	久遠逃亡
030	비	賀漢(100)	비 丹介의 1소생	久遠逃亡
031	노	貴漢(98)	비 德介의 1소생	久遠逃亡
032	노	李首(102)	비 德介의 2소생	久遠逃亡 *연령 오기?
033	비	女玉(94)	비 德介의 3소생	久遠逃亡
034	노	占代(84)	비 德介의 4소생	久遠逃亡
035	노	禮金(78)	비 德介의 5소생	久遠逃亡
036	노	千金(76)	비 德介의 6소생	久遠逃亡
037	비	貴玉(98)	비 億眞의 2소생	久遠逃亡
038	비	禮介(91)	비 億眞의 3소생	久遠逃亡
039	노	云香(83)	비 億眞의 4소생	久遠逃亡
040	노	永玉(81)	비 丹介의 1소생	久遠逃亡
041	비	貴德(102)	비 丹梅의 1소생	久遠逃亡
042	비	件伊(92)	비 內 德의 1소생	久遠逃亡
043	노	毛上(79)	비 內 德의 3소생	久遠逃亡
044	비	成今(73)	노 淸同의 1소생	久遠逃亡
045	비	丹香(81)	비 辛玉의 1소생	久遠逃亡
046	비	日今(99)	노 男伊의 1소생	久遠逃亡
047	비	萬玉(81)	비 玉春의 3소생	久遠逃亡
048	비	海子(53)	비 以今の 2소생	久遠逃亡
049	노	永立(78)	비 貴德의 1소생	久遠逃亡 *모 貴德 ⇨ No041
050	노	壽石(48)	비 貴德의 4소생	久遠逃亡 *모 貴德 ⇨ No041
051	비	貴德(41)	비 以陽의 1소생	久遠逃亡
052	노	宗渭(33)	비 以陽의 2소생	久遠逃亡
053	노	先龍(58)	비 准化의 1소생	逃亡
054	노	先立(55)	비 准化의 2소생	-
055	비	先禮(52)	비 准化의 3소생	居 (경상도) 鎭海
056	노	先發(44)	비 准化의 4소생	(晉州 南面) 金冬於里 8統 3戶 來
057	노	永發(62)	비 取梅의 1소생	久遠逃亡

№	성별	이름(나이)	부모 및 출생 정보	비고
058	비	戒梅(70)	비 戒代の 3소생	久遠逃亡
059	비	銀介(116)	비 彦介의 1소생	久遠逃亡
060	비	秋介(123)	비 眞良의 1소생	久遠逃亡
061	비	己玉(115)	비 眞良의 3소생	久遠逃亡
062	비	於屯介(101)	비 眞良의 4소생	久遠逃亡
063	비	淡春(99)	비 世代的 1소생	居 (전라도) 順天
064	비	毛安(69)	비 厚花의 2소생	居 順天
065	비	莫春(60)	비 厚花의 3소생	居 順天
066	노	日文(46)	비 厚花의 4소생	居 順天
067	노	得仁(27)	비 厚花의 5소생	居 順天
068	비	己任(55)	비 准德의 1소생	居 順天
069	노	善翊伊(27)	비 准德의 2소생	居 順天
070	비	自業(21)	비 准德의 3소생	居 順天
071	노	泉伊(34)	비 莫春의 2소생	居 順天 *모 莫春 ⇔ Na065
072	노	柳宗(29)	비 己任의 1소생	居 順天 *모 己任 ⇔ Na068
073	비	今德(19)	비 己任의 2소생	居 順天 *모 己任 ⇔ Na068
074	노	丁民(48)	미기재	居 順天
075	비	愛還(51)	비 愛眞의 2소생	-
076	비	玉環(31)	비 愛還의 1소생	*모 愛還 ⇔ Na075
077	비	士花(24)	비 愛還의 3소생	*모 愛還 ⇔ Na075
078	노	己先(21)	비 愛還의 4소생	*모 愛還 ⇔ Na075
079	노	以先(18)	비 愛還의 5소생	*모 愛還 ⇔ Na075
080	노	善金(42)	비 件里의 3소생	居 (晉州 南面) 柵谷(里) *모 件里 ⇔ Na042(件伊)
081	비	今玉(33)	비 件里의 4소생	居 柵谷 *모 件里 ⇔ Na042
082	노	西云(42)	노 己男의 良妻 1소생	逃亡
083	노	淡沙里(35)	노 准生の 良妻 1소생	-
084	비	得禮(28)	노 准生の 良妻 2소생	-
085	비	得賜(25)	노 准生の 良妻 3소생	-
086	비	礼良(28)	노 右立의 良妻 1소생	-

№	성별	이름(나이)	부모 및 출생 정보	비고
087	비	丑先(26)	노 右立의 良妻 2소생	-
088	비	先月(33)	노 先龍의 良妻 1소생	*부 先龍 ⇨ Na053
089	비	順禮(62)	비 禮花의 1소생	居 (경상도) 熊川
090	비	先月(47)	비 禮花의 2소생	居 熊川
091	비	先花(44)	비 禮花의 3소생	居 熊川
092	노	惡發(48)	비 順禮의 1소생	仰役
093	노	石連(28)	비 順禮의 2소생	金冬於里 別戶 去
094	비	應玉(42)	미기재	買得, 金冬於里 別戶 去
095	노	萬日(22)	비 先月의 1소생	居 熊川 *모 先月 ⇨ Na090
096	노	日哲(22)	비 先花의 1소생	居 熊川 *모 先花 ⇨ Na091
097	비	日金(20)	비 先花의 2소생	居 熊川 *모 先花 ⇨ Na091
098	비	岳德(46)	비 禮今의 1소생	-
099	비	哲花(23)	비 岳德의 1소생	-
100	비	今娘(21)	비 士目の 1소생	-
101	비	今女(17)	비 士目の 2소생	加現
102	비	三鄉(52)	비 丹玉의 1소생	逃亡
103	비	守江(25)	비 三鄉의 1소생	逃亡
104	노	厚仁(37)	미기재	居 (淸州 南面) 松谷(里)
105	노	月生(38)	비 林春의 1소생	-
106	비	信花(20)	비 月先의 1소생	居 (淸州 南面) 永縣(里)
107	비	厚介(57)	미기재	-
108	비	古禮(34)	비 厚介의 1소생	居 (경상도) 固城
109	비	六月(53)	미기재	居 固城
110	비	業眞(42)	비 六月의 1소생	居 固城 *모 六月 ⇨ Na109
111	비	己陽(27)	비 六月의 2소생	居 固城 *모 六月 ⇨ Na109
112	비	己漢(22)	비 六月의 3소생	居 固城 *모 六月 ⇨ Na109
113	노	石發(19)	비 六月의 4소생	加現 *모 六月 ⇨ Na109
114	비	順玉(63)	노 今의 良妻 1소생	丙辰(1676) 逃亡 金冬於里 別戶割去
115	비	于音禮(28)	비 順玉의 2소생	丙辰(1676) 逃亡 金冬於里 別戶割去

No	성별	이름(나이)	부모 및 출생 정보	비고
116	비	수향(59)	노 閑泉의 良妻 1소생	居 (전라도) 光陽
117	비	玉之介(62)	비 順介의 2소생	居 (전라도) 海南
118	비	玉今(49)	비 順介의 4소생	居 海南
119	노	丁守(43)	노 千起의 良妻 1소생	居 (전라도) 康津
120	비	惡只(42)	노 千起의 良妻 2소생	居 康津
121	노	丁石(37)	노 千起의 良妻 3소생	居 康津
122	노	丁必(34)	노 千起의 良妻 4소생	居 康津
123	노	貴天(16)	노 丁守의 1소생	居 康津 *부 丁守 ⇔ No119
124	노	貴萬(14)	노 丁守의 2소생	居 康津 *부 丁守 ⇔ No119
125	노	夢隱(14)	비 阿之의 1소생	居 康津 *모 阿之 ⇔ No120(惡只)
126	비	厚介(12)	비 阿之의 2소생	居 康津 *모 阿之 ⇔ No120
127	노	張卜(11)	비 阿之의 3소생	居 康津 *모 阿之 ⇔ No120
128	비	張今(18)	비 阿之의 4소생	居 康津 *연령 오기? *모 阿之 ⇔ No120
129	비	玉郎(41)	미기재	買得, 居 鎭海
130	비	三月(47)	미기재	買得
131	비	先花(25)	비 三月의 1소생	*모 三月 ⇔ No130
132	비	先陽(23)	비 三月의 2소생	*모 三月 ⇔ No130
133	비	善眞(20)	비 三月의 3소생	*모 三月 ⇔ No130
134	노	元靜(18)	비 三月의 4소생	*모 三月 ⇔ No130
135	비	件里(16)	비 三月의 5소생	*모 三月 ⇔ No130
136	비	進陽(24)	미기재	買得, 居 (晉州 北面) 邑內(里)
137	노	久發(41)	비 九非의 1소생	居 (경상도) 南海
138	비	元花(28)	비 九非의 4소생	居 南海
139	비	孝心(23)	비 耑介의 2소생	居 南海
140	비	礼花(63)	미기재	居 鎭海
141	노	戒民(39)	비 礼花의 1소생	居 鎭海 *모 礼花 ⇔ No140
142	비	信花(15)	비 礼花의 4소생	居 鎭海 *모 礼花 ⇔ No140
143	노	毛日(54)	비 大春의 1소생	居 (晉州 南面) 赤梁(里)
144	노	甲龍(47)	비 大春의 2소생	居 赤梁

No	성별	이름(나이)	부모 및 출생 정보	비고
145	노	甲尙(45)	비 大春의 3소생	居 赤梁
146	비	萬秋(23)	비 時介의 1소생	-
147	노	大明(24)	노 甘之의 2소생	-
148	비	貴花(28)	미기재	買得
149	노	億夫(23)	미기재	買得
150	노	明玄(23)	미기재	買得
151	비	莫礼(28)	미기재	買得, (淸州 東面) 代如村(里) 鄭戶 去
152	비	降玉(21)	미기재	買得, 居 (경상도) 三嘉
153	노	長石(37)	비 明月의 1소생	金冬於里 8統 3戶 來

Aspects of Family Composition and Owned Servants by the Jinju Ha Family who Lived in Gyeongsang-do Jinjumok(晉州牧), Seen through the Copy of *Junhogu* (Extract of Family Registers) in the Early of the 18th Century, Held by the University of Hawaii

Lhim, Hak-Seong\*

This paper bibliographically reviewed the data of the “Extract of Family Registers, Ha Do-Hyeong, Jinju, 1702” (1702년晉州河道亨准戶口)” contained in the *Hojeokbusa* (戶籍簿寫) which is in the possession of the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Hawaii. In addition, the aspects of the owner's family composition and owned servants were analyze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confirmed through thi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is data was a transcription of family register data collec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Korea to investigate the old system and customs of Korea. However, it was confirme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original data that there were many errors in the process of transcribing the original data.

The Ha Do-hyeong family was a prestigious military official in the Jinju area. The family composition described in the data showed a large family consisting of a married head of household (戶首), son couples, and another unmarried son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se families had set up

---

\*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Inha University

residences in several places in the Jinju area, and that these family members were frequently moving between residences.

There were a total of 153 servants identified in the data. Among them, live-in servants (率奴婢) accounted for about 30.7%, live-out servants (外居奴婢) about 36.6%, and runaway servants (逃亡奴婢) about 32.7%. Males accounted for about 41.2% and females about 58.8%.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about 20% more female servants (婢) than male servants (奴).

The live-out servants lived in a total of ten areas: six towns in Gyeongsang-do Province and four towns in Jeolla-do Province respectively. However, 55.4% of them lived in Gyeongsang-do Province and 44.6% in Jeolla-do Province. The region where the largest number of servants lived was Suncheon (順天), Jeolla-do Province, where about 21.4% of the total live-out servants living alone lived. In addition, many also resided in Jinju (晉州), Gyeongsang-do Province (19.6%) and Gangjin (康津), Jeolla-do Province (17.9%). However, it was noted that the residences of the live-out servants were mainly located in the seaside villages and that there were many live-out servants who lived in the Jinju village where the owner lived.

The data shows that the average age of the all servants was about 47.4 years old. It was 44.7 years old for male servants and 49.3 years old for female servants. It was 30.9 years old for live-in servants, 36.8 years old for live-out servants, and 74.8 years old for runaway servants. Regarding the age distribution, 25.5% were in their 20s, 15.0% were in their 40s, 11.1% were in their 30s, 10.5% were each in their 10s and 50s, 7.2% were in their 90s, 6.5% were in their 60s, 4.6% were each in their 70s, 80s, and 100 years of age or older.

In particular, many servants in their late 90s and older appeared, and it is believed that most of them were runaway servants and had already died. The reason why the ages of the runaway servants who were obviously dead were

estimated and recorded continuously was because of the owner's intention and obsession to prove the ownership of the child born to the runaway servants.

Finally, about 66.7% of the servants were in familial relations. Live-in servants were analyzed as about 68.1%, live-out servants as about 78.6%, and runaway servants as about 52.0%. Therefore, live-out servants's familial relations was found to be the highest. As a result, in the case of the Ha Do-hyeong family who lived in Jinju from the end of the 17th century to the early of the 18th century, it can be said that the hereditary succession of servants accounted for an absolute portion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wned servants.

**Key words** : The University of Hawaii,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Korea, *Junhogu*(准戶口. Extract of Family Registers), Jinju(晉州), Jinju Ha Family, Family Composition, Owned Servants